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해 양 경 찰 청 (인사담당관)
연 월 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 이유

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「경찰공무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(안 제6조~제7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양수산부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2. . ~ 12. 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6조제1항”을 “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법 제8조제3항제2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법 제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법 제22조제2항”을 “법 제2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제1항”을 “법 제10조제1항”으로, “법 제8조제2항”을 “법 제10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제5항”을 “법 제10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8조제3항제2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2호”로 한다.

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4조제3항”을 “법 제30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법 제24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30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인사발령을 위한 서류) ①	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	제6조(인사발령을 위한 서류) ①		
청[「경찰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	-----			
이라 한다) <u>제6조제1항</u> 에 따른	-----			
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	----- <u>제7조제1항</u> -----			
경우에는 추천을 말한다. 이하	-----			
같다]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	-----			
서류를 갖추야 한다.	-----			
② (생 략)				
제7조(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) ①	임용권자(영 제4조에 따라 임용	제7조(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) ①		
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	-----			
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	-----			
임용제청권자(<u>법 제6조제1항</u> 에	----- <u>법 제7조제1항</u> -----			
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	-----			
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	-----			
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경찰공무	-----			
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	-----			
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	-----			
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.	-----			
② · ③ (생 략)				
제23조(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	제23조(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			
준 등) ① <u>법 제8조제3항제2호</u>	준 등) ① <u>법 제10조제3항제2호</u>			
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	-----			

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
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
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24조(채용후보자의 등록) ① ·

② (생 략)

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7조제2항
각 호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
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등록을 받지 않거나 이를
취소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유를
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26조(정규임용심사) ① · ② (생
략)

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
또는 면직제청에 대한 법 제22
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
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
한 절차를 준용한다.

제27조(응시서류의 제출 등) ①
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쟁 및
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(이하
“공개경쟁채용시험”이라 한다)
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
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
험(이하 “경찰간부후보생 공개

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채용후보자의 등록) ① 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법 제8조제2항

-----.

제26조(정규임용심사) ① · ② (현
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법 제28
조제2항-----

-----.

제27조(응시서류의 제출 등) ①

법 제10조제1항-----

--- 법 제10조제2항-----

[illegible]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0조 제4항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법 제10조 제3
항 제2호-----

5. ~ 8. (생략) ③·④ (생략) 제77조(정년연장 신청) ① <u>법 제24조제3항</u>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을(이하 “정년연장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·2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법 제24조제1항제2호</u>에 따른 계급정년(이하 “계급정년”이라 한다)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: 2월 말일까지 2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77조(정년연장 신청) ① <u>법 제30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<u>법 제30조제1항제2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--	--